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3만원씩 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 지급.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위탁(허가) 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한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 (안 제7조제1호)
-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 제8조)
-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과 요건 확인 (안 제9조)
- 수당지급의 정지 등 (안 제10조)
- 수당의 환수 (안 제11조)
- 신상변동 신고 등 (안 제12조)
-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11. 10. 19 ~ 11. 8(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관련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 사업
8. 군과 관련된 선양자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10.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공원·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2. 공원·도로·주차장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바로 지급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만 월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관련조문 :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기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대상자를 약 800명으로 추계, 연간 사망자를 60명으로 계산

- 연간 영예수당 감소액 : 60명 × 30,000원 × 12개월 = 21,600,000원
 - 연간 사망위로금 증가액 : 60명 × 150,000원 = 9,000,000원
- ⇒ 21,600,000원 - 9,000,000원 = 연간 12,600,000원 감소

나. 추계 결과

현재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대상자 : 423명

향후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포함) : 약 800명

보훈영예수당 ⇒ 800명 × 30,000원 × 12개월 = 288,000,000원

사망위로금 ⇒ 60명 × 150,000원 = 9,000,000원

합계 = 297,000,000원(2012년)

다. 재원조달방안

군 자체수입(지방세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담당 정 성 문
연락처	(033) 330 -234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297,000	284,400	271,800	259,200	246,600	1,359,000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297,000	284,400	271,800	259,200	246,600	1,359,000
재원 조달		297,000	284,400	271,800	259,200	246,600	1,35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97,000	284,400	271,800	259,200	246,600	1,359,000
	지방세	297,000	284,400	271,800	259,200	246,600	1,359,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련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가

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5.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세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 (조사·연구 기관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 ①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 (예우 및 지원)

-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

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2조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제28조 (국제 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협력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

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뒤

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前科)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

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8조의2 (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

고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면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뒤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

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

②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상이등급 6급이나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